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7.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의 안 번 호	
------------	--

1. 제안이유

-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도곡온천개발사업소는 한시적으로 화순온천개발사업소의 분소로 설치 운영하고, 동 개발사업소의 사업적 성격을 감안 존속시한을 '9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 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전문 개정하려는 것임.

2. 제정근거

- 지방 12200 - 778 ('95. 5. 9)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기구.정원승인
- 법무 11250 - 179 ('95. 6.16)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관련조례안조치 지시

3. 주요골자

제2조에 사업소와 분소의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제5조 ②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개정하였음.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제1조 (설치) 화순군 온천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온천지구내의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사업소 및 분소) ① 사업소는 화순군 북면 옥리에 두고 도곡분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

② 사업소는 북면 온천지구, 도곡분소는 도곡온천지구를 관할한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온천지구 종합개발 및 관광자원의 보호관리
2.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3. 사용료, 임대료, 부담금 등의 조정 부과 징수
4. 온천지구내 각종 금지행위의 지도 단속
5. 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온천지구 개발, 관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7.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분소장) ① 분소에 분소장을 두며,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로 보한다.

②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공무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온천수와 주차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및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 ③ (존속시한)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 존속시한은 1996. 12. 31까지 한다.

검 토 보 고 서

□ 조 례 명

-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주 요 내 용

1. 화순군 온천개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와 도곡온천개발사업소를 통합 운영 (안 제 1 조)
2. 도곡온천 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순온천개발사업소 내에 도곡분소 설치 (안 제 2 조)
3. 사업소 및 분소의 관리 및 위치 (안 제 2 조)
 - 사업소 → 북면온천지구 개발 관리 (화순군 북면 옥리)
 - 분 소 → 도곡온천지구 개발 관리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 사업소 및 분소의 주요업무 (안 제 3 조)
 - 온천지구 종합개발 및 관광자원의 보호 관리
 - 온천지구 개발 관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 각종 사용료, 임대료,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 기타 온천지구 개발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소장 및 분소장 (안 제 4조, 5조)
 -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5급), 도곡분소장은 지방토목 6급 또는 지방건축 6급
 - 도곡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관장 및 소속공무원 지휘 감독
 -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존속 시한 1996. 12. 31 (안 부칙 제 3항)

□ 개정 사유

- 지금까지 화순온천개발사업소와 도곡온천개발사업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소장의 직급이 불합리하고 (화순온천사업소 : 5급, 도곡온천사업소 : 6급) 운영면에서도 이원화되어 있어 온천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화순 및 도곡온천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해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조례 전면 개정

□ 검토결과(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기구 및 정원이 승인 (화순온천 : '87. 11. 25, 도곡온천 : '95. 5. 10),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화순 및 도곡온천개발사업소의 조례를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 조례로 통합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